보

- 846. 동강상생사회적협동조합
- 847.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
- 848. 천안오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
- 849. 주천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청정주천
- 850. 세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
- 851. 안다미로 사회적협동조합
- 852. 양산희망학교사회적협동조합
- 853. 금곡고 사회적협동조합 버디쿱
- 854. 서종초사회적협동조합말꽃
- 855. 마을교육공동체 세워고사회적협동조합
- 856. 송산고 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 핑거스낵
- 857. 신비고사회적협동조합도토리
- 858. 추풍령쿱피스 사회적협동조합
- 859. 고산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고순도순
- 860. 익산부송중학교도담사회적협동조합
- 861. 전라중학교 생그레 사회적협동조합
- 862.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
- 863.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동행
- 864. 서부산공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

◉환경부고시제2020-223호

「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」 일부 개정

「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」(환경부고시 제2018-23호, 2018. 2. 9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26일

환 경 부 장 관

제1조 중 "환경영향평가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3조"를 "「환경영향평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2조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건설 및 기타분야"를 "환경분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69조의2 별표5의2에서 정한 환경영향평 가기술자의 자격기준등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. 다만, 환경영향평가사는 특급환경영향평가 기술자로 본다

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1. 평가항목별 조사비('별표 6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'을 말한다) 및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관계법령에 고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. 다만,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의 장이 해당 항목의 시장가격을 조사·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◉환경부고시제2020-224호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35조 [별표 9] 제2호나목2)의 타) 및 제42조제1항 [별표 11] 제2호나목 2)의 거)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보

2020년 10월 26일

환 경 부 장 관

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폐기물관리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9조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"시행 규칙"이라 한다) 제35조 [별표 9] 제2호나목2)의 타) 및 제42조제1항 [별표 11] 제2호나목2)의 거) 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"이란 에어돔형이나 지붕형 폐기물매립시설(이하 "폐쇄형 폐기물 매립시설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2. "에어돔형 폐기물매립시설(이하 "에어돔형"이라 한다)"이란 공기막 구조로 공기막 내 외부의 압 력 차에 따라 막재(幕材)에 강성을 주어 일정한 폐쇄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의 폐기물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기계·기구 등을 말한다.
- 3. "지붕형 폐기물매립시설(이하 "지붕형"이라 한다)"이란 철골구조물 등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을 갖추고 지붕 위에 외장재인 막재(幕材) 등으로 일정한 폐쇄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의 폐기물매 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기계·기구 등을 말한다.
- 4. "유해가스"란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·일산화탄소·황화수소 등의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최종처분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 고시보다 강화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되 그 외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기준

제4조(에어돔형 설계기준) 에어돔형 설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에어돔형 구조의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의 KDS 41 70 01 막과 케이블 구조 기준을 준용한다.
- 2. 에어돔형 구조의 설계하중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야 하며, 시공방법 등에 따른 추가 하중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
 - 가. 고정하중(*D*)
 - 나. 활하중(*L*)
 - 다. 적설하중(*S*)
 - 라. 풍하중(W)
 - 마. 지진하중(E)
 - 바. 초기 인장력 (T_i)
 - 사. 내부압력 (P_i)